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76호 2019. 6. 2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2호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7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4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86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 7
- 삼척시 공고 제587호 분할조서 의결 공고 ----- 8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72호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강원도고시 제268호, 2019. 6.2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29조와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이하 “위임조례”라 함)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시장 위임 결정사항)의 결정(변경)과
2. 강원도지사 결정·고시사항 및 금회 시장 위임 결정·고시사항 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체에 대하여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시장 위임 결정사항)

나. 위 치: 삼척시 정상동, 성남동 및 사직동 일원

다. 규 모

- 근린공원①(정상공원) 면적 축소: A= 436,700㎡ → 436,131㎡(감 569㎡)
- 지구단위계획구역(성남지구) 지정: A= 573,563㎡

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장 위임 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정상공원	근린공원	정상동 산38-1번지 일원	436,700	감) 569	436,131	1974. 7. 19. (강원도고시 제2699호)	자연녹지지역, 최근고시일 : 2010. 7. 9.

■ 공원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정상공원	• 면적 감소 : A= 436,700㎡ → 436,131㎡ (감 569㎡)	- 대로 3-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경계조정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사유지 일부 제척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1	성남지구	성남동 47-1번지 일원	-	증) 573,563	573,563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성남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 573,563㎡ • 위치: 성남동 47-1번지 일원	-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2017년 제1회) 심의의 견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 성남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장기미집행 시설 대량 폐지에 따라 단계발 방지 및 계획 적 개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장 결정사항) 결정(변경) 도면 및 전체 지형도면 : 실음 생략(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삼척시 고시 제2019 - 7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323-550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776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323-550	20190628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산 명칭 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72, 17	강원도 삼척시 광진길 180 (교동)	20190628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광진)활용 (기존도로명)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계	도로명주소 2건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323-550	강원도 삼척시 광진길 180 (교동)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776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323-550	20190628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산 명칭 활용	인근에 위치한 산 명칭 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72, 17	강원도 삼척시 광진길 180 (교동)	20190628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광진)활용(기존도로명)	지역지명(광진)활용(기존도로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삼척시공고 제2019-586호

분할개시결정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9.06.28. ~ 2019.07.19.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157-1	대	544	조 * 권 외 1 인	5*0*0*	삼척시 원덕읍 기곡천로 *****	조 * 권 외 1 인

삼척시 장
2019년 6월 27일

297mm×210mm [별첨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4호서식)

삼척시공고 제2019-587호

분할조서 의결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9. 6.28. ~ 2019. 7.12.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분할 필지 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삼척시		정하	산2-1	임야	2,421	16	삼척시 외 14 인			삼척시 외 14 인

삼척시 장
2019년 6월 27일